

第253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4月26日(火)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2.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3. 環境政策基本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4. 環境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김맹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6.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7.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계속)
8.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계속)
1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계속)
13.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最低賃金法 一部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最低賃金法 一部改正法律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6.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障礙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계속)
18.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一部改正法律案(계속)

審査된案件

1.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김영주 · 노영민 · 단병호 · 배일도 · 이인영 · 장복심 · 조일현 · 조정식 · 제종길 · 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2
2.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김교홍 · 이호웅 · 이윤성 · 김용갑 · 한광원 · 이기우 · 신학용 · 한병도 · 조승수 · 이철우 · 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2
3. 環境政策基本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3
4. 環境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5.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김맹곤 의원 대표발의)(김맹곤 · 김원웅 · 안민석 · 장경수 · 박영선 · 김영주 · 조일현 · 윤호중 · 김교홍 · 조경태 · 강길부 · 구논희 · 정장선 · 유시민 · 오영식 · 박상돈 · 신학용 · 이상민 · 김석준 · 최인기 · 제종길 · 김양수 · 김충환 · 김우남 · 정성호 · 심재덕 · 안상수 · 노웅래 · 이상락 · 노현송 · 이계경 · 이원영 · 김형주 · 신중식 · 박찬석 · 진수희 · 김태홍 의원 발의)(계속) 3
6.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발의)(이군현 의원 외 17인 발의)(계속) 3

7.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이호웅 · 서재관 · 신학용 · 김태홍 · 임종석 · 엄호성 · 이재오 · 최인기 · 김원웅 · 노영민 · 강혜숙 · 안상수 · 주승용 · 김덕규 · 유시민 · 이원영 · 이상락 · 김영춘 · 황우여 · 심재덕 · 신중식 · 김교홍 의원 발의)(계속) 3
8.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9.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0.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김춘진 · 최재성 · 천정배 · 정두언 · 장복심 · 박순자 · 선병렬 · 강혜숙 · 김충환 · 백원우 · 이종걸 · 제종길 · 김형주 · 우원식 · 장향숙 · 주승용 · 염동연 · 우제창 · 유승희 · 김재홍 · 홍미영 · 최성 · 김한길 · 노현송 · 김애실 · 이경숙 · 이은영 · 신중식 · 이해훈 · 이해봉 · 이근식 · 손봉숙 · 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5
1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김춘진 · 최재성 · 천정배 · 정두언 · 장복심 · 박세환 · 선병렬 · 강혜숙 · 김충환 · 백원우 · 이종걸 · 제종길 · 김형주 · 우원식 · 장향숙 · 주승용 · 염동연 · 우제창 · 유승희 · 김재홍 · 홍미영 · 최성 · 김한길 · 노현송 · 김애실 · 이경숙 · 이은영 · 신중식 · 안병엽 · 이해훈 · 이근식 · 손봉숙 · 박순자 · 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5
12.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김춘진 · 최재성 · 천정배 · 정두언 · 장복심 · 이해훈 · 선병렬 · 강혜숙 · 김충환 · 백원우 · 이종걸 · 제종길 · 김형주 · 우원식 · 장향숙 · 주승용 · 염동연 · 우제창 · 유승희 · 김재홍 · 홍미영 · 최성 · 김한길 · 노현송 · 김애실 · 이경숙 · 이은영 · 신중식 · 안병엽 · 이근식 · 손봉숙 의원 발의)(계속) 5
13.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박승환 · 유기준 · 이철우 · 김재원 · 이해봉 · 엄호성 · 김석준 · 이성권 · 김명주 · 정문헌 · 박형준 · 신중식 · 서병수 · 진수희 · 한화갑 · 고경화 · 원희룡 · 안상수 · 김효석 · 정두언 · 제종길 · 박계동 · 정병국 · 배일도 · 공성진 · 김형주 · 장복심 의원 발의)(계속) 5
14. 最低賃金法 一部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5
15. 最低賃金法 一部改正法律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김부겸 · 김영주 · 백원우 · 이목희 · 우원식 · 제종길 · 김형주 · 장복심 · 이화영 의원 발의)(계속) 5
16.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7. 障礙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구노희 · 김영주 · 김형주 · 노영민 · 심재덕 · 이상호 · 유기홍 · 유승희 · 윤호중 · 이목희 · 이용희 · 이인영 · 이화영 · 장복심 · 전병헌 · 제종길 · 조정식 · 최규성 · 최재성 · 한병도 의원 발의)(계속) 5
18.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一部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 ·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김부겸 · 노회찬 · 박계동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6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이경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입법조사관 이정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환경

부와 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는 일정인데 환경부 소관을 먼저 심사 의결한 다음, 이어서 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김영주 · 노영민 · 단병호 · 배일도 · 이인영 · 장복심 · 조일현 · 조정식 · 제종길 · 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2.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김교홍 · 이호웅 · 이윤성 · 김용갑 · 한광원 · 이기우 · 신학용 · 한병도 · 조승수 · 이철

우·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3. 環境政策基本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4. 環境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김맹곤 의원 대표발의)(김맹곤·김원웅·안민석·장경수·박영선·김영주·조일현·윤호중·김교홍·조경태·강길부·구논회·정장선·유시민·오영식·박상돈·신학용·이상민·김석준·최인기·제종길·김양수·김충환·김우남·정성호·심재덕·안상수·노웅래·이상락·노현송·이계경·이원영·김형주·신중식·박찬석·진수희·김태홍 의원 발의)(계속)

6.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발의)(이군현 의원 외 17인 발의)(계속)

7.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이호웅·서재관·신학용·김태홍·임종석·엄호성·이재오·최인기·김원웅·노영민·강혜숙·안상수·주승용·김덕규·유시민·이원영·이상락·김영춘·황우여·심재덕·신중식·김교홍 의원 발의)(계속)

8.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김교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김맹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에서 제출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를 맡고 있는 이목희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여 제종길 위원, 배일도 위원, 공성진 위원, 조정식 위원, 단병호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4월 22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총 22건의 환경부 소관 법률안 가운데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3건,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3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6건 등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김맹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등 6건의 동 개정법률안 중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각각 대안을 제안키로 하고 이들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대안으로 제안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규정에 지속가능개념을 명시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시 당해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환경측면의 적정성·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침으로써 전략환경평가개념을 도입하며, 둘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견을 다시 하도록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사업허가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시 의견수렴 대상은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로 하였으나, 관계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의 범위는 불명확하므로 삭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

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적용대상 중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도상가를, 공동주택의 범위에 기숙사를 각각 추가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동 개정법률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여 다음 소위원회로 미루고,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등 운송수단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행 결과를 지켜본 후에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도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에 수고하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열의를 가지시고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잘 검토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제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서 재협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것이 판교 신도시 개발 등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에 이런 재협의 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매우 빨리 실효성 있게 법이 집행되기를 바라고, 3개월 정도를 두고서 하는 것으로 법안을 냈는데 이번에 처리된 것은 1년의 시행기간을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개발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라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시행시기가 1년 정도 미루어졌는데 장관님께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박결호 이번에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담겨 있는 전략환경평가 개념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하기 전이라도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게 변경이 가해질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개발당국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김교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3항의 3건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맹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이호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에서 제출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8항의 4건 법률안에 대하여

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박결호**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여 행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제작,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립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야기되었던 사회적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지방건물에 딸린 지하도 상가까지 확대하였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좋은 의견들은 환경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 소관 법률안 의결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환경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관 이하 환경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노동부 소관의 법률을 계속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김춘진·최재성·천정배·정두언·장복심·박순자·선병렬·강혜숙·김충환·백원우·이종걸·제종길·김형주·우원식·장향숙·주승용·염동연·우제창·유승희·김재홍·홍미영·최성·김한길·노현송·김애실·이경숙·이은영·신중식·이혜훈·이해봉·이근식·손봉숙·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1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김춘진·최재성·천정배·정두언·장복심·박세환·선병렬·강혜숙·김충환·백원우·이종걸·제종길·김형주·우원식·장향숙·주승용·염동연·우제창·유승희·김재홍·홍미영·최성·김한길·노현송·김애실·이경숙·이은영·신중식·안병엽·이혜훈·이근식·손봉숙·박순자·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12.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김춘진·최재성·천정배·정두언·장복심·이혜훈·선병렬·강혜숙·김충환·백원우·이종걸·제종길·김형주·우원식·장향숙·주승용·염동연·우제창·유승희·김재홍·홍미영·최성·김한길·노현송·김애실·이경숙·이은영·신중식·안병엽·이근식·손봉숙 의원 발의)(계속)

13.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박승환·유기준·이철우·김재원·이해봉·엄호성·김석준·이성권·김명주·정문현·박형준·신중식·서병수·진수희·한화갑·고경화·원희룡·안상수·김효석·정두언·제종길·박계동·정병국·배일도·공성진·김형주·장복심 의원 발의)(계속)

14. 最低賃金法 一部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희찬·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15. 最低賃金法 一部改正法律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김부겸·김영주·백원우·이목희·우원식·제종길·김형주·장복심·이화영 의원 발의)(계속)

16.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障 碍 人 雇 傭 促 進 及 職 業 再 活 法 中 改 正 法 律 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구논희·김영

주·김형주·노영민·심재덕·우상호·유기홍·유승희·윤호중·이목희·이용희·이인영·이화영·장복심·전병헌·제종길·조정식·최규성·최재성·한병도 의원 발의)(계속)

18.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一部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단병호·단병호·강기갑·권영길·김부겸·노회찬·박계동·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계속)

(10시56분)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계속하여 노동부 소관 법률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박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해서 제종길 위원, 배일도 위원, 공성진 위원, 조정식 위원, 단병호 위원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28일 제252회와 제253회 국회(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2일과 25일 총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동부 소관 법률 가운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등 8건의 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

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순서가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조정식 의원과 단병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관련 법안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전후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규정은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휴가를 청구한 때는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명문화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때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임신 중의 기간도 계약해지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 배우자 출산휴가 명칭을 출산간호휴가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서 반영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이 소수의견으로 있었습니다.

다음,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국가가 산전후휴가급여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지급요건과 지급기간 등은 법률로 정하도

록 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시 여성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을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산전후휴가급여 기간을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그 외 기업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재원을 실업급여재원보다는 고용안정재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반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박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내국인 고용기회의 침해 및 정주화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을 보다 제한적으로 축소하고 시행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대체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부문 고용의무 적용제외사유를 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장애인이 강제력 행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한편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폐지됨에 따라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기업체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폐지되는 업종에 한해 5년간 부담금 감면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종전의 생계비, 유사근로

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더하여 최저임금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반영하는 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기준으로 추가하였고 대상이 유사한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 및 양성훈련생과 수습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규정을 폐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제도로 통합하며 그간 적용제외 인가대상이었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주기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회계연도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취약근로자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금보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동 수정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감액률을 정부가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공익위원의 위촉기준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개정 시 반드시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0조의 별칙에 대한 경과조치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목희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제가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정한 개정안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 적용을 제외시켰던 공공부문이 이번 법 개정으로 전체 68%에서 한 16% 정도로 떨어지고 민간부문도 21%였던 것이 전체가 다 폐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약 2만 개 정도 늘어날 수 있는 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장애인들의 인권 신장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그동안 막혀 있었던 초등학교 교사에 장애인들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함으로써 해서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을 어린 시절부터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무고용 적용제외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결정하신 정부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놓은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잘 안 되었는데 하나는 장애인 2% 의무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금이 너무 낮아서 기업들이 잘 안 하는 것 아니냐, 따라서 부담금을 올려야 되겠다고 제안했고 그것을 기업규모별로 제한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의무고용률에 따라서 2%는 그대로 두고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 50%를 가중하는 것을 올해 시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해 정도를 두고 봐서 그런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특히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좀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라면서 한 해 지켜보고 내년쯤에는 부담금 문제를 다시 제기할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에 필요한 사무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칙이구요. 일반회계에서 끌어와서 그러한 사무비용을 담당케 해야 되는데 지금의 조건이 그렇지 못하고, 복지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양보를 했

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한 2% 고용부터 그 이후의 일은 기업이 담당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될 몫이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은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장애인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원칙이다 그래서 이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조건이 그렇지 못해서 원칙을 세우는 데 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좀더 연구해 가면서, 그리고 기획예산처하고 상의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서 장애인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국가와 사회, 기업이 어떻게 분담해야 될지에 관해서 좀더 많은 연구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축조심사를 거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박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를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최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2건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6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인데, 이 부분은 제종길 위원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제 위원장, 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제종길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오늘 가결된 법률안은 전부 의원발의 입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와 방향을 같이 해서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사실은 대단히 의미 있는 법안이 오늘 여기에서 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법안을 발의해서 장애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정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더불

어서 필요한 행정적이고 정책적인 조치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제종길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出席委員(11人)

공 성 진	김 영 주	김 형 주	단 병 호
배 일 도	우 원 식	이 경 재	이 목 희
장 복 심	제 종 길	조 정 식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하	중	범
전 문 위 원	이	동	근

○政府側參席者

환경부				
장	관	곽	결	호
환	경	고	재	영
대	기	김	신	중
노동부				
장	관	김	대	환
근	로	엄	현	택
고	용	양	승	주
평	등			
국	장			

【報告事項】

○意見提示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월16일 김영주·박영선·이경제·단병호·이덕모·우원식·장복심·김현미·공성진·조정식 의원 발의)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이호용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5일 이호용·최인기·김원웅·노영민·정성호·염동연·원혜영·안상수·이원영·신학용·이재오·김태홍·임종석·주승용·김덕규·유시민·이시중·우제창·백원우·황우여·정청래·오제세·심재덕·엄호성·신중식·김교홍·유선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22일 산업자원위원회 의견제시